

##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	2003. 6. 13	조례 제 445호
개정	2005. 10. 5	조례 제 641호
일부개정	2013. 3. 6	조례 제1272호
일부개정	2013. 11. 1	조례 제132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4. 10. 6	조례 제13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6. 8. 8	조례 제1593호
일부개정	2023. 12. 8	조례 제2467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,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인시축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6. 8. 8, 2023. 12. 8>

제2조(법인) 용인시축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23. 12. 8>

제3조(사무소) 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12. 8>

제3조의2(사업)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1. 센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
2. 센터 재원조달 방안,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
3. 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
4. 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
5.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

[중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. 12. 8]

제4조(정관)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·상태 및 평가액
5.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
6. 이사 및 감사의 정수·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
7.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
10.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 8. 8>

제5조(설립등기)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. <개정 2023. 12. 8>

제6조 삭제 <2016. 8. 8>

제7조(임원) ① 센터에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 <신설 2023. 12. 8>

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③ 상임이사, 이사 및 감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[제목개정 2023. 12. 8]

제8조 삭제 <2023. 12. 8>

제9조 삭제 <2023. 12. 8>

제10조(이사회) ① 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. <개정 2023. 12. 8>

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. <개정 2023. 12. 8>

④ 감사는 필요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8>

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>

⑥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 12. 8>

제11조 삭제 <2023. 12. 8>

제12조(비밀누설의 금지) 센터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제13조(직원의 임면) 센터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제14조

[ 제3조의2로 이동 <2023. 12. 8> ]

제15조 삭제 <2023. 12. 8>

제16조 삭제 <2023. 12. 8>

제17조 삭제 <2023. 12. 8>

제18조 삭제 <2023. 12. 8>

제19조(비용부담) 센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에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업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 
<개정 2023. 12. 8>

제20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8>

②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공유재산(“물품”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“무상사용수익”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 
<개정 2023. 12. 8>

제21조(운영관리) ① 센터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부를 관련 전문단체 및

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, 센터 교육생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② 제1항의 운영법인 설립 시에는 축구 또는 민간경영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, 센터는 일정 지분의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제22조(운영경비 등) 센터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1. 시의 출연금
2. 국가 및 경기도의 지원금
3. 그 밖의 수익금

제23조 삭제 <2023. 12. 8>

제24조 삭제 <2023. 12. 8>

제25조 삭제 <2023. 12. 8>

제26조 삭제 <2023. 12. 8>

제27조 삭제 <2023. 12. 8>

제28조(행정지원) 시장은 센터가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23. 12. 8>

제29조 삭제 <2023. 12. 8>

#### 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「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 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(법인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용인시축구센터 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.

④(정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용인시축구센터건립 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의하여 제정된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정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41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3. 6 조례 제127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11. 1 조례 제132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2. 12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용인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용인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⑧ 생략

부칙 <2014. 10. 6 조례 제13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용인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용인시 행정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⑦ 부터 ⑬ 까지 생략

부칙 <2016. 8. 8 조례 제159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호(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2023. 12. 8 조례 제246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